

항목: **학생**

발행: 2012-05-11

번호: **A-830**

제목: 차별 금지 정책 및 차별에 대한 내부 불만사항 제기 절차

1 중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0년 9월 17일자 규정 A-830을 폐기하고 대체한다.

변경 사항:

- 교육청의 차별 금지 정책 및 내부 불만사항 제기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에 따라 본 규정의 제목이 바뀌었다.
- 교육청 직원이 다른 직원, 취업 지원자 및 기타 교육청과 업무를 함께 하거나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는 등 교육청과 관련된 개인을 대할 때 금지된 차별 행위를 규정한다. (p.1, § I.A)
- 교육청 직원이 학생을 대할 때 금지된 차별 행위를 규정한다. (p. 1, § I.B)
- 뉴욕주 모든 학생을 위한 존중법 (New York State Dignity for All Students Act: DASA)에 따라 "체중"을 학생을 위한 보호 범주에 포함한다. (p.1, § I.B)
- 감독자는 반드시 차별 관련 사건 또는 불만제기를 즉시 보고해야 하며 감독자의 보고 누락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p. 2, § I.E)
- 교육청 차별 금지 정책을 위반하는 행동은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p. 2, § I.F)
- 교육청 차별 금지 정책은 의도 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p. 2, § I.G)
- 정책을 위반한 직원은 법적 제재 및 적절한 징계를 받는다. (p. 2, § I.H)
- 교육청 직원, 취업 지원자, 학부모, 학생, 기타 교육청과 업무를 함께 하거나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는 등 교육청과 관련된 개인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p.2, § I.I)
- 교육청 직원은 동등한 기회 담당실(Office of Equal Opportunity: OEO)의 소환에 응하고 OEO의 조사에 협조하도록 규정한다. (p. 2, § I.I)
- 차별에 대한 거짓 혐의에 대해 고의로 증언하는 증인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p. 3, § II.E)

개요

본 규정은 2010년 9월 17일자 교육감 규정 A-830, 불법 차별/부당 대우에 관한 불만 제기 절차 (Procedures for Filing Internal Complaints of Unlawful Discrimination/Harassment)에 우선하고 이를 대체한다. 본 규정은 뉴욕시 교육청의 차별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위법적인 차별 또는 괴롭힘, 불만제기에 따른 보복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직원, 취업 지원자, 학부모¹, 학생, 기타 교육청과 업무를 함께 하거나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는 등 교육청과 관련된 개인을 위한 내부 조사 절차를 규정한다. 또래에 대한 성희롱 및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한 편견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에 대한 불만은 교육감 규정 A-831 또래 성희롱 (Peer Sexual Harassment), 교육감 규정 A-832, 학생 대 학생 편견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 (Student-to-Student Bias-Based Harassment, Intimidation, and/or Bullying) 및/또는 교육감 규정 A-443 및 징계 코드에 규정된 징계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한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가한 차별/괴롭힘에 대한 혐의는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43 및 징계 코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I. 정책

- A.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외국인 신분, 시민권 상태, 연령, 결혼 여부, 파트너십 상태, 장애, 성 지향, 성별(성), 군복무 상태, 구속이나 유죄 판별 유무 (법률이 허용한 경우 예외), 유전적인 특징 또는 가정 폭력, 성 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 여부와 관계 없이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이다.² 또한 위에 열거한 어떤 이유로도 성희롱 또는 보복을 포함한 부당 대우가 자행되는 일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며, 또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법률 및 단체 협상에 관한 교육청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이다

따라서 다른 직원 또는 취업 지원자에게 직장 또는 업무와 관련된 행사 중 위에 열거된 사유로 차별 및/또는 괴롭힘을 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교육청 직원은 정책을 위반한 것이다: (1) 직원/취업 지원자의 취업 또는 보상, 임기, 조건 또는 특권에 악영향을 준 경우; 또는 (2) 호전적, 공격적 또는 위협적 업무 환경을 조성한 경우.

교육청 직원이 취업 지원자 및 교육청과 업무를 함께 하거나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는 등 교육청과 관련된 개인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 및/또는 괴롭힘을 가하는 것은 정책을 위반한 것이다.

- B.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외국인 신분, 시민권 소지 여부, 장애, 성적 취향, 성별(성) 또는 체중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이다. 또한 성 희롱을 포함한 상기 언급된 이유로부터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이다.²

따라서 학생에게 학교 시설 내 또는 학교와 관련된 행사 중 위에 열거된 사유로 언어, 문서 또는 신체적 행동을 포함한 차별 및/또는 괴롭힘을 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교육청 직원은 정책을 위반한 것이다: (1)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가하거나 이로부터 혜택을 입는 것을 근본적으로 훼방하거나 학생의 교육 자체에 방해가 됨; 또는 (2)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위협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함; 또는 (3) 학생의 정신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한 경우; 또는 (4)기타 학생의 교육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¹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또는 보호자(들)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한다.

² 위법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범주의 정의는 첨부 번호 1에서 검토하실 수 있다.

- C. 직장 내 차별에 반대하거나 섹션 I(A) 또는 I(B)에 명시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관련 불안제기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조사를 접수 또는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것 역시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이다. 보호된 활동 참여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부정적 행위는 보복으로 간주된다.
- D. 차별, 괴롭힘, 보복 및 협박이 없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및 업무 환경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직원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교직원들은 학교와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모범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 E. 감독자는 불법적인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감독자는 또한 지금 말한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의 사례 및 이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한 일체의 불안사항 제기 사실을 뉴욕시 교육청 평등기회 담당실(Office of Equal Opportunity: "OEO")에 보고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된다. 불안 또는 차별 사안을 OEO에 보고하지 않는 감독자는 본 정책을 위반한 것이다.
- F. 본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는 연방, 주 또는 지역 차별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 G. 본 정책은 의도 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행동 및 발언에 모두 적용된다.
- H. 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교직원에게 법적 제재 및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 I. 모든 교육청 직원은 OEO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OEO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II. 불안제기 절차

교육청 직원, 취업 지원자 및 기타 교육청과 업무를 함께 하거나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는 등 교육청과 관련된 개인은 다음과 같은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에 대한 불안제기를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제기는 반드시 본 규정 하단에 명시된 OEO 전화번호/주소로 연락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되어야 한다.

A. 불안제기 접수 시한

위법적인 차별에 대한 불안제기의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해결을 위해 모든 불안사항은 **가급적 빨리 OEO에 접수**되어야 한다. **OEO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사안은 **접수하지 않는다**.

B. 불안제기 접수 절차

1. 불안제기는 본 규정에 첨부된 불안제기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첨부 No. 2). 불만이 접수되면 OEO는 사안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OEO 조사담당자를 지정한다. OEO가 불안사항이 완전히 조사되고 해결되기 전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OEO는 불안사한 조사의 완료되기 전 중간 해결을 추천할 수 있다.
2. 조사 후 OEO는 교육감/대리인에게 본 규정의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추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³ 교육감/대리인은 상황에 따라 시한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불안 접수 후 9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불안제기인 및 혐의 당사자는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3. 본 규정의 위반이 입증되면 혐의 당사자의 상관은 OEO와 상의하여 필요한 징계 또는 수정 조치를 취한다.
4. OEO는 판결이 요구하는 모든 수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확인한다.

³ 교육직 직원에 대한 불안사항을 담당하는 교육감의 대리인은 법무자문위원 (General Counsel)이다. 비교육직 직원에 대한 불안사항을 담당하는 교육감 대리인은 부교육감이다.

C. 익명 불만 제기

불만사항 제기자는 OEO에게 익명으로 특정한 관행 또는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내용의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사항 제기자가 제공한 정보로 판단했을 때 조치 가능한 경우에는, OEO는 제기된 불만사항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다.

D. 비밀 보장

본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이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법적 조사에 협조할 의무, 가해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제공 및/또는 화해, 조사 또는 신고 내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상황에서는 공개될 수 있다.

E. 차별에 대한 거짓 혐의 제기

고의적으로 차별에 대한 거짓 혐의를 제기하거나 증언하는 사람 또는 고의로 조사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선의로 제기한 불만은 입증되지 않더라도 거짓 혐의 제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III. 처리 절차의 공개

뉴욕시 교육청의 차별 금지 정책 및 내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공지는 매년 교직원을 배포된다. 또한 각 담당실과 학교는 반드시 교육청의 차별 금지 정책(OEO 연락정보 및 규정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곳 명시)을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첨부 3을 참조. 불만제기 양식은 학교 또는 담당실에 직접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IV. 불만제기 절차 대안

이러한 내부 절차는 다음에 명시된 외부 기관에 혐의 제기를 하는 것을 포함한 기타 해결 방안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 기관에 불만을 접수한 경우 OEO는 내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안을 법무 담당실로 송치한다.

- 뉴욕시 인권 위원회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 뉴욕시 교육청 시민권리 담당실 (Office for Civil Rights)
- 미국 동등한 취업 기회 위원회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뉴욕주 인권 위원회 (New York Stat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미연방 노동부

접수 시한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V. 문의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전화:

718-935-3320

무료 전화:

877-332-4845

Office of Equal Opportunity
N.Y.C. Department of Education
65 Court Street – Room 1102
Brooklyn, NY 11201

웹사이트: www.nyc.gov/schools/oeo/

팩스:

718-935-2531